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299 회 임 시 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3. 9.

서 민 우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서민우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걷기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큰 가운데, 특히 최근에는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,
-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는 다양한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구민과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2조제1호 걷는 길의 정의에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” 을 추가하였고, 제3호를 신설하여 “맨발걷기길”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4조의2에서 맨발걷기길의 조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,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“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” 을 추가하였으며,

○ 안 제8조에서는 “명품길” 을 “건기 좋은 길” 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○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○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서민우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3106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9. 1.

발 의 자: 서민우, 박종길, 장호섭,
황국주, 박왕규, 박정환

1. 제안이유

- 걷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가운데, 특히 최근에는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임
-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는 다양한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걷는 길의 정의에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” 추가 및 맨발걷기길 용어 정의 신설 (안 제2조)
- 맨발걷기길의 조성 등에 대한 규정 신설 (안 제4조의2)
- 홍보를 위한 사업에 “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” 을 추가 (안 제7조)
- “명품길” 을 “걷기 좋은 길” 로 용어 변경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 1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다. 관계법령 : 붙임 3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

라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

3. “맨발걷기길”이란 걷는 길 중 황토나 마사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맨발로 산책하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맨발걷기길의 조성 등)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조성 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.

②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

용하여야 한다.

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
제8조의 제목“(명품길 지정 등)”을“(걷기 좋은 길 지정 등)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1항 중 “명품길(이하 “명품길”)”을 “걷기 좋은 길(이하 “걷기
좋은 길”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명품길”을 각각 “걷기 좋
은 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걷는 길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 및 관광객(이하 “구민 등”이라 한다)에게 역사·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나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<u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<u>길</u></p> <p>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맨발걷기길</u>”이란 걷는 길 중 <u>황토나 마사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맨발로 산책하기에</u></p>

<신 설>

제7조(홍보)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- 4. (생 략)

제8조(명품길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생태·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·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명품길(이하 “명품길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, 역

적합한 길을 말한다.

제4조의2(맨발걷기길의 조성 등)

① 구청장은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조성 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.

②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홍보) 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
-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8조(걷기 좋은 길 지정 등) ① -----

걷기 좋은 길(이하 “걷기 좋은 길”-----.

② ----- 걷기 좋은 길-----

사성,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
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
등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특정구역에 대하여
명품길 지정 시 길에 대한 이름
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
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을 명(命)
할 수 있다.

-----.

③ -----
건기 좋은 길 -----

-----.

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도시공원”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·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, 제46조, 제48조의2,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
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(이하 “도시자연공원구역”이라 한다)